



조달청

## 조달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갈수록 굳건해 나갑니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년 도로안전지침 개정 전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 제품 판매중지 등 안내

### 1. 관련 사항

- 가.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량난간<차량방호책>, 도로중앙분리대)MAS계약: 붙임2~4참조
- 나.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서 관련 질의: 쇼핑물기획과-2121('23.3.9.)
- 다.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서 관련 질의 회신: 도로시설안전과-1348('23.3.16.)

2.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간에 공급하고 있는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에 대하여 '23.2.13.~3.3. 동안 감사원의 「방호울타리 성능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동 감사에서 '12.11.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 개정 전 실물충돌시험성적서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공급에 관한 지적을 받아 관련 나. 및 다.호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12년 11월 도로안전지침 개정 기준 이전의 실물충돌시험성적 제품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16년 이후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5호에 따라 '12년 도로안전지침 개정 전의 기준으로 발급받은 실물충돌시험성적 제품에 대하여 '23.4.1.자로 일괄하여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납품이 이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요구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종전제품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한국도로공사 13.04.11, 한국교통안전공단 13.06.01. 이전 발급 시험성적제품

4.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붙임5와 같이 전체 수요기관에 안내하였으며, 정정공고 및 종합쇼핑몰 공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후 종전제품에 대한 납품요구 및 납품요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첨부물은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나. 및 다.호 질의회신 문서 각 1부.

2. 개정기준 이전 방호울타리 등록현황 1부.

3. 개정기준 이전 방호울타리 미종결납품요구 현황 1부.

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험성적서 발급현황(종전제품) 1부.

5. 방호울타리 종전제품 적용 유예기간 등 안내(조달청→수요기관) 끝.

조 달 청 장



수신자 차량방호울타리 계약업체

주무관 김은철 사무관 진영근 쇼핑물기획과 전결 2023. 3. 20.  
장 김우환

협조자

시행 쇼핑물기획과-2512 (2023. 3. 20.)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둔산동) / www.pps.go.kr

전화번호 070-4056-7286 팩스번호 0505-480-1707 / kec1517@korea.kr / 대국민 공개



조달청

## 조달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국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년 도로안전지침 개정 전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 제품의 적용 유예기간 등 안내

### 1. 관련 사항

가. 감사원 「방호울타리 성능 및 안전 관리실태 감사」 : 국토환경감사국제5과-44('23.2.10.)

\* 감사대상: 국토교통부, 조달청, 경상북도 / 감사기간: '23.2.13.~3.3.

나.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서 관련 질의: 쇼핑물기획과-2121('23.3.9.)

다. 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성적서 관련 질의 회신: 도로시설안전과-1348('23.3.16)

2.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간에 공급하고 있는 차량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에 대하여 관련 가.호의 감사원 감사 결과, '12.11.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도로안전지침)」 개정 전 기준 실물충돌시험성적서 제품은 2016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다.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지침 개정 전의 "설계기준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종전제품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년 이후부터는 사용이 어렵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니다.

3.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12년 도로안전지침 기준 이전의 종전제품에 대해서는 '23.4.1.부터 일괄하여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조치하고,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조치대상 : 한국도로공사 13.04.11, 한국교통안전공단 13.06.01. 이전 발급 시험성적제품

4. 관련하여 붙임2의 개정 이전 기준 제품을 납품요구하여 붙임3의 현재 진행 중인 수요 기관에서는 "도로안전지침 및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문서"를 준수하시어, 동 지침 및 국토부 회신문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종전제품에 대한 납품요구 취소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을 소속기관 및 사업부서 등에 반드시 전달하시어 종전 제품에 대한 납품요구 및 납품요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요구중인 제품 실물충돌시험 발급일자를 붙임4에서 필히 확인 및 검토

붙임 : 1. 관련 나. 및 다.호 질의회신 문서 각 1부

2. 개정기준 이전 방호울타리 등록현황 1부.

3. 개정기준 이전 방호울타리 미종결납품요구 현황 1부.

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험성적서 발급현황(종전제품) 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자 각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주무관 **김은철** 사무관 **진영근** 쇼핑물기획과 전결 2023. 3. 20.  
장 **김우환**

협조자

시행 쇼핑물기획과-2501 (2023. 3. 20.)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둔산동) / [www.pps.go.kr](http://www.pps.go.kr)

전화번호 070-4056-7286 팩스번호 0505-480-1707 / [kec1517@korea.kr](mailto:kec1517@korea.kr) / 대국민 공개